#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32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 민형배·김용민·장경태

문정복 · 김동아 · 부승찬

김승원 • 한민수 • 조계원

김문수 · 강준현 · 김현정

이재강 의원(13인)

# 제안이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검찰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검찰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음. 이로 인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조작수사, 표적수 사, 선택적수사, 별건수사 등 처벌이 필요한 권력자들을 외면하고, 억 울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곤 했음.

한편,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전관부패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전관부패로 천문학적인 고액 수임료를 받는 등 검찰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다 보니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

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은 공소청이 가지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해 중대범 죄수사청이 수사하도록 함. 이는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균형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중대범죄는 「형법」 제2편제1장·제2장의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규정함(안 제2조).
- 다.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며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토록 하기 위하여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을 둠(안 제4조).
- 라. 중수청에 중수청장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1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판사·검사·변호사의직에 있었던 사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묶(안 제7조).
- 바. 지역중수청에 지역중수청장을 두고, 지역중수청장은 그 지역중수 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을 지휘· 감독함(안 제10조).
- 사. 지역중수청의 직제, 분장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
- 아. 중수청(지역중수청 포함)에 수사관을 두며,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1 2조).
- 자.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14조).
- 차. 중수청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함(안 제5조).
- 카.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수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인사위원회를 둠(안 제20조).
- 타. 수사관의 정원은 중수청 및 각 지역중수청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 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1조).
- 파. 수사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수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음(안 제28조).
- 하. 중대범죄등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 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하고, 수사관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함 (안 제34조 및 제35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28호),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0730호)과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중대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제2장의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말한다.
  - 2.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제1호의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다 른 죄
    - 나.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 한 죄로서 제1호의 범죄자가 범한 다른 죄
  - 3. "중대범죄등"이란 제1호와 제2호의 죄를 말한다.
  - 4. "중수청 공무원"이란 중대범죄수사청장, 지역중수청장, 중대범죄 수사청 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을 말한다.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한다)의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

- 제4조(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 ① 중대범죄등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둔다.
  - ② 중수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중대 범죄수사청(이하 "지역중수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③ 중대범죄수사사무를 전담하는 중수청 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이라 한다)은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④ 중수청과 지역중수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중대범죄수사청장) ① 중수청에 중수청장을 둔다.
  - ② 중수청장은 중수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중수청 사무를 총괄 하며 중수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중수청장은 제7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 ④ 중수청장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 중수청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할 의무가 있으며, 국회에서의 답변 과 서류제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의 증언·감 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 ⑤ 중수청장의 보수 및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 ⑥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 ⑦ 중수청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⑧ 중수청장은 중수청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 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6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수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직 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1.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 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 ③ 중수청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중수청장의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할 중수청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행정안전부 차관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3. 경찰청장
  -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 ⑦ 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⑨ 추천위원회는 중수청장 후보자로 2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 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 ① 추천위원회가 제9항에 따라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①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차장) ① 중수청에 차장을 둔다.
  - ② 차장은 중수청장을 보좌하며, 중수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차장은 10년 이상 제6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중수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차장의 궐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9조(직제) ① 중수청의 직제는 국·부 또는 과로 한다.
  - ② 중수청 직제의 명칭 및 분장 사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지역중대범죄수사청

- 제10조(지역중수청장) ① 지역중수청에 지역중수청장을 둔다.
  - ② 지역중수청장은 그 지역중수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 무원 및 소속 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제11조(직제) 지역중수청의 직제, 분장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수사관

- 제12조(수사관)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수청(지역중수청을 포함한다)에 수사관을 둔다.
- 제13조(수사관의 직무) ① 수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대범죄등에 관한 수사

- 2.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범한 범죄에 관한 수사
- ② 수사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 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수사관의 자격)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제15조(수사관의 임용) ① 수사관의 계급은 중수청장, 차장, 수사1급부터 수사7급까지로 한다.
  - ② 수사1급 이하 수사5급 이상 수사관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수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③ 수사6급 이하 수사관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수청장이 임용한다.
- 제16조(수사관의 직무관할) 수사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중수청(소속 지역중수청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소속 중수청장(소속 지역중수청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얻어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8조(수사관에 관한 지휘·감독) ① 수사관은 직무에 관하여 직무관 할의 범위 내에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수청(지역중수청을 포함한다)의 구체적 사건 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없다.
- 제19조(수사관의 이의제기권) ① 수사관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수사관은 이의제기를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③ 그 밖에 수사관의 이의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인사위원회) ① 중수청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수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중수청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 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수청장이 된다.
- ③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수청장
- 2. 차장
- 3.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수청장이 위촉한 사람 1명
-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④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정원) ① 중수청장, 차장,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수사관의 정원은 중수청 및 각 지역중수청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당연퇴직) 수사관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23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수사관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정년) 수사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제25조(정치 관여 금지 등) ① 수사관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 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 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3.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처분을 약속하는 행위
  - 4.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5.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 에 관여하는 행위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 ③ 수사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 2.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행위 제26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수사관의 임용·승진·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중수청장"으로, "경찰공무원"은 "수사관"으로 본다.

####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직원

- 제27조(중대범죄수사청 직원) ① 중수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수청 직원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중수청 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보칙

- 제28조(수사관의 파견 금지 등) 수사관은 중수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 제29조(관련범죄 범위)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련범죄 수사 범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범위를 조정한다.
- 제30조(이의신청) ①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해당 지역중수청에 이의신청하거나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지역중수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중수청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정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중수청 처분에 대하여 지역중수청에 서면으로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역중수청에서 기각결정을 한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수사심의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31조(수사심의위원회) ①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하여 중수청 및 각 지역중수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부 위원을 과반으로 한다.
- ③ 수사심의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④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중수청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 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 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중수청장, 차장, 수사관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 ③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 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 ④ 중수청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중수청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 제3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중수청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업무상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중수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 ③ 수사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245조의8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4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중수청장은 중대범죄등에 대하여 불송 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 죄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 제35조(수사관의 범죄에 대한 수사) 중수청장은 수사관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6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수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장 벌칙

- 제37조(정치 관여죄) ①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8조(직권남용죄) ①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 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

- 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중수청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중수청장 및 중수청 공무원의 임명 등 중수청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조직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청의 소관 사무 중 이 법에 해당하는 사무는 중수청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검사의 소관 사무 중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와 검사 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 계하는 중수청장의 행위 또는 중수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